

[붙임]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경기도청-장애인]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해야 하며, 미접수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함.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견본주택 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 10:00-14:00까지만 접수 가능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자 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 접수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3조제3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11.(예정)]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위장전입, 허위문서 제출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이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의거 2년의 거주무기기간이 해당되어 전매 또는 매매 시 규제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함.

1. 공급개요 및 주요일정(예정)

공급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공급 규모	총 23개동 (지하4층 ~ 지상 35층) 아파트 총 2,678세대 중 일반공급 589세대
입주자모집공고	2024년 10월 11일(금) 예정
견본주택 개관	2024년 10월 18일(금) 예정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4년 10월 21일(월) 예정
당첨자 발표	2024년 10월 30일(수) 예정

※ 상기 주요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홈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주택형	공급면적(㎡)			장애인 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확정	예비
43	43.73	25.25	68.98	1	(5)
59A	59.47	28.70	88.17	1	(5)
59B	59.45	27.95	87.40	-	-
59C	59.46	28.88	88.34	-	-
74A	74.96	30.67	105.63	-	-
74B	74.94	31.23	106.17	-	-
74C	74.92	30.65	105.57	-	-
84A	84.88	28.71	113.59	-	-
84B	84.99	28.89	113.88	-	-
84C	84.99	29.71	114.70	-	-
84D	84.96	28.41	113.37	1	(5)
84E	84.99	29.18	114.17	-	-
계				3	(15)

※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예비추천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선정함.

※ 예비입주자(예비추천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

3.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호 중 제35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해당하시는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11.(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통장 가입요건

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장애인	필요 없음	필요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11.(예정)]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우선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자 포함)로 선정된 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2024.10.21.(예정)]에 반드시 청약접수 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함.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예비추천자 및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

4. 기타 유의사항

-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중도금 대출 LTV에 제한이 있으며, 개인의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 대출유무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용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사업주체는 고객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함. 단, 본인이 동일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됨.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 조의 2 에 따라 부부의 경우 중복청약할 수 있으나 청약접수시간이 빠른 사람의 당첨건만 유효함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첨부되는 제출 자료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급대상 주택형별 공급금액,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 사 홈페이지(<http://www.raemian.co.kr>)에서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분양상담전화를 통해 분양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음.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 서류 등으로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위치도/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	-----

